

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7호서식] <개정 2025. 10. 23.>

☐ 먹는해양심층수

☐ 해양심층수처리수

☐ 제조업

☐ 수입업

☐ 유통전문판매업

☐ 변경허가신청서

☐ 변경등록신청서

☐ 변경신고서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일자		처리기간 변경허가·변경등록신청: 20일 변경신고: 7일	
신청인 (신고인)	법인 또는 기관명						
	성명(대표자)				생년월일		
	주소		(전화번호:)				
상호				허가·등록· 신고 번호			
		변경 전			변경 후		
변경사항							

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 후단, 같은 조 제2항 후단, 같은 조 제5항 후단, 제36조의2제1항 후단, 같은 조 제2항 후단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(신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신고인)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1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.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: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증,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 나.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경우: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 2.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이 신청서(신고서)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